

NEWSLETTER 999

May 21, 2024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고세율원재료 정의 보완 및 사실확인 제출 서류 간소화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림축산물의 관세 등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령입니다. 지난 달 동 법령 상 고세율원재료에 대해 안내드린 입안 계획이 5월 20일자로 개정 및 시행되어 해당 내용 재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세율적용 우선순위 개정 내용을 반영한 고세율원재료 정의 보완
- 고세율원재료 제조·가공 사실확인 제출 서류 간소화

II. 주요 내용

1. ‘고세율원재료’ 용어 범위 개정(제2조의2)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세율이 관세법 적용 세율과 같은 경우, FTA협정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세율적용 우선순위가 개정됨에 따라, “고세율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농림축산물의 범위에 ‘시장접근물량 초과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FTA 협정관세율 부과 물품’을 포함

현 행	개 정
<p>제2조의2(용어의 정의)</p> <p>1. “고세율원재료”란 제2조에서 정한 품목으로서 시장 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말한다.</p>	<p>제2조의2(용어의 정의)</p> <p>1. ----- 시장 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초과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p>

2. 고세율원재료 제조·가공 사실 확인 서류 간소화(제4조, 제5조, 별지 제2호)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확인 서류로서 각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을 폐지하고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 내용 정비(별지 제1호서식)

현행	개정
<p>제4조(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p> <p>① 제3조제1항의 방법과 같이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p>2.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 1부.</p>	<p>제4조(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p> <p>① ----- ----- ----- ----- -----.</p> <p>〈삭 제〉</p>

III. 시행일

2024년 05월 20일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제정·개정문

I Contact



서경은 관세사
T 02-6011-3033
E keso@esein.co.kr



이지은 관세사
T 02-6011-3092
E jelee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